

 <p>거창군 Geochang County</p> <p>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p>	<h1 style="font-size: 4em; margin: 0;">공 보</h1> <p style="font-size: 1.5em; margin: 0;">제802호 2021. 5. 4.(화)</p>	
---	--	---

선 결	기관의 장

고 시

제2021-74호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제2021-75호 농어촌도로[102호선] 노선지정 공고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11
제2021-76호 도로명주소 고시	15

공 고

제2021-660호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7
제2021-661호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39
제2021-677호 거창군계획시설[방재시설 신기천(지방하천)] 『입석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51
제2021-685호 거창군관리계획(교통시설 중로3-12)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54
제2021-693호 도로의 사용 개시 공고	56
제2021-695호 공시송달 공고	58

회 략									
------------	--	--	--	--	--	--	--	--	--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행정 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거창군 고시 제2021-74호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고시하고, 같은 법 제25조제3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4일

거창군수

1. 도로구역 결정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 치	면 적 (㎡)	기 점	종 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km)
결정	군도	군도 37호선	양항 ~ 동례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양항리, 가조면 동례리 일원	207,389.5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양항리 1121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동례리 1725-1	남하면 둔마리	7.1

2. 도로구역 결정 사유

- 구)88올림픽고속국도 폐지로 인한 지방도1084호선 노선 변경 및 거창군 도로 인계인수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구)88고속도로 기 개설에 따른 사업 시행기간 해당사항 없음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간
- 열람장소 : 경상남도 거창군청 건설과 도로담당 [☎(055)940-3552]

6. 지형도면 : 열람장소에 비치

□ 편입토지의 세목

일련 번호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합계			677,650.7	207,389.5					
1	남하면 양항리	762-1	도	6,164	3,315		국(건설부)			
2	"	783	도	8,534	2,912		국(건설부)			
3	"	789-3	전	679	679		거창군			
4	"	790	전	48	48		거창군			
5	"	795-1	전	126	126		거창군			
6	"	798-1	전	240	240		거창군			
7	"	798-2	전	432	432		거창군			
8	"	798-7	전	297	297		거창군			
9	"	812	전	219	219		거창군			
10	"	813-3	답	103	103		거창군			
11	"	813-4	도	2,613	1,401		국(건설부)			
12	"	852-3	도	872	872		국(건설부)			
13	"	853-3	도	1,035	1,035		국(건설부)			
14	"	854-1	도	30	30		국(건설부)			
15	"	854-2	도	5	5		국(건설부)			
16	"	868	도	4,496	2,055		국(건설부)			
17	"	871-2	도	1,210	770		국(건설부)			
18	"	872	도	2,157	2,157		국(건설부)			
19	"	873-1	도	7	7		국(건설부)			
20	"	878	도	1,325	1,325		국(건설부)			
21	"	881	도	89	89		국(건설부)			
22	"	901	도	7,461	7,461		국(건설부)			
23	"	960	도	5,839	1,242		국(건설부)			
24	"	961-2	도	869	33		국(국토해양부)			
25	"	965-1	도	1,952	1,952		국(건설부)			
26	"	967-1	도	863	863		국(건설부)			
27	"	1121	천	195,203	370		국(건설부)			
28	"	1136	구	292	67		국(농림수산부)			
29	"	1138	도	499	499		국(건설부)			
30	"	1138-3	도	141	141		국(건설부)			
31	"	1138-5	도	1,847	1,847		국(건설부)			
32	"	1139	구	264	264		국(농림수산부)			
33	"	1140	도	714	458		국(건설부)			
34	"	1141	도	2,604	1,116		국(건설부)			
35	"	1170	답	1,489.8	1,489.8		거창군			
36	"	1170-1	도	239.4	239.4		국(국토교통부)			
37	"	1178	도	126.2	126.2		국(농림부)			

일련 번호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38	"	1180	도	62.5	62.5		국(농림부)			
39	"	1181	도	155.8	155.8		국(농림부)			
40	"	1188	도	1,188	301		국(국토교통부)			
41	"	산8-1	도	25,962	11,816		국(건설부)			
42	"	산9-7	임	129	129		거창군			
43	"	산54-1	도	3,994	3,614		국(건설부)			
44	남함면 문마리	169-2	도	503	503		경상남도			
45	"	204	도	198	198		경상남도			
46	"	204-3	도	581	581		경상남도			
47	"	208-1	도	193	193		경상남도			
48	"	209-1	도	164	164		경상남도			
49	"	240-3	도	276	276		경상남도			
50	"	240-4	도	110	110		경상남도			
51	"	242	도	198	198		경상남도			
52	"	245-2	도	155	59		국(건설부)			
53	"	246-2	도	79	9		거창군			
54	"	723-1	답	48	48		경상남도			
55	"	746	도	1,139	1,139		경상남도			
56	"	757	도	368	368		경상남도			
57	"	760	도	832	832		경상남도			
58	"	765-2	답	36	36		경상남도			
59	"	773-2	답	32	32		경상남도			
60	"	774-1	도	459	459		경상남도			
61	"	775	전	151	151		경상남도			
62	"	775-1	도	37	37		경상남도			
63	"	776-1	답	506	506		경상남도			
64	"	777-1	도	19	19		경상남도			
65	"	777-2	전	168	168		경상남도			
66	"	804-1	도	7	7		경상남도			
67	"	804-2	답	12	12		경상남도			
68	"	805	답	114	114		경상남도			
69	"	805-1	도	50	50		경상남도			
70	"	805-2	답	127	127		경상남도			
71	"	806	답	113	113		경상남도			
72	"	807-1	도	191	191		경상남도			
73	"	807-2	천	103	103		경상남도			
74	"	807-3	천	152	152		경상남도			
75	"	807-6	천	128	128		경상남도			
76	"	808-1	도	59	59		경상남도			
77	"	811-2	도	18	18	거창군	정규복			

일련 번호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남하면 둔마리 672				
78	"	811-4	도	584	584		경상남도			
79	"	811-8	답	264	264		경상남도			
80	"	811-9	답	42	42		경상남도			
81	"	812-2	도	581	255		거창군			
82	"	812-4	도	96	96		경상남도			
83	"	812-8	묘	17	17		경상남도			
84	"	848-1	도	117	117		경상남도			
85	"	851	도	30	30		경상남도			
86	"	852-5	도	15	15		경상남도			
87	"	852-6	도	372	372		경상남도			
88	"	852-7	답	576	576		경상남도			
89	"	852-8	답	68	68		경상남도			
90	"	853-2	답	372	372		경상남도			
91	"	878-9	도	328	328		경상남도			
92	"	878-10	도	346	346		경상남도			
93	"	878-11	도	27	27		경상남도			
94	"	879-6	도	56	56		경상남도			
95	"	879-7	도	1	1		경상남도			
96	"	880-3	도	87	87		경상남도			
97	"	882-2	도	1,142	1,142		경상남도			
98	"	882-4	도	1	1		경상남도			
99	"	885-1	도	40	40		경상남도			
100	"	885-2	도	22	22		경상남도			
101	"	885-3	도	144	144		국(국토교통부)			
102	"	893-3	도	23	23		경상남도			
103	"	893-4	대	5	5		경상남도			
104	"	895-3	도	223	223		경상남도			
105	"	896-1	도	97	97		경상남도			
106	"	897-4	답	227	227		경상남도			
107	"	1042-3	도	2,222	552		국(국토교통부)			
108	"	1052-1	도	2,028	933		국(국토교통부)			
109	"	1073	전	392	88		국(국토교통부)			
110	"	1073-2	도	129	28		국(국토교통부)			
111	"	1074-2	도	542	450		국(국토교통부)			
112	"	1121-1	도	140	89		국(국토해양부)			
113	"	1121-2	도	2,615	873		국(국토교통부)			
114	"	1121-3	도	122	111		국(국토교통부)			
115	"	1121-6	도	1,448	859		국(국토교통부)			
116	"	1122-1	도	2,119	840		국(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17	"	1123-1	도	1,207	339		국(국토해양부)			
118	"	1123-2	도	866	245		국(국토해양부)			
119	"	1125	도	649	141		국(국토해양부)			
120	"	1127-1	도	512	207		국(국토해양부)			
121	"	1134-2	대	39	39		국(국토교통부)			
122	"	1134-3	도	3	0.2		국(국토교통부)			
123	"	1134-4	도	50	55		국(국토교통부)			
124	"	1134-6	대	462	311		국(국토해양부)			
125	"	1135-1	도	52	52		경상남도			
126	"	1135-2	전	293	66		국(국토해양부)			
127	"	1136-17	임	123	15		국(국토해양부)			
128	"	1153-6	학	474	168		국(국토해양부)			
129	"	1154-1	대	256	188		국(국토해양부)			
130	"	1155-5	도	617	0.6		국(국토교통부)			
131	"	1155-6	도	3,844	1527		국(국토해양부)			
132	"	1169-2	도	1,815	399		경상남도			
133	"	1170-3	답	205	78		국(국토교통부)			
134	"	1171	도	108	64		국(국토교통부)			
135	"	1171-1	도	41	41		경상남도			
136	"	1224	도	5,578	1,160		국(건설부)			
137	"	1224-1	도	57	57		국(건설부)			
138	"	1224-2	도	81	81		국(건설부)			
139	"	1224-3	도	189	189		국(건설부)			
140	"	1224-4	도	1,208	1,208		국(건설부)			
141	"	1245-1	도	3,848	3,848		국(건설부)			
142	"	1245-3	도	351	351		국(건설부)			
143	"	1245-4	도	394	394		국(건설부)			
144	"	1251-3	도	2,613	2,613		국(건설부)			
145	"	1252	도	1,343	1,343		국(건설부)			
146	"	1253-1	도	688	688		국(건설부)			
147	"	1254-1	도	259	259		국(건설부)			
148	"	1257-1	도	71	71		국(건설부)			
149	"	1280-3	답	8	8		국(국토교통부)			
150	"	1281-6	도	490	490		국(국토교통부)			
151	"	1281-9	답	1,244	1,153		국(국토해양부)			
152	"	1281-11	답	240	79		국(국토해양부)			
153	"	1283-7	임	1,140	139		국(국토교통부)			
154	"	1284-1	도	1,821	604		국(국토교통부)			
155	"	1284-2	도	697	145		국(국토교통부)			
156	"	1284-4	도	779	246		국(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57	"	1284-5	도	723	158		국(국토교통부)			
158	"	1284-11	도	1,792	72		국(국토교통부)			
159	"	1284-12	도	319	37		국(국토교통부)			
160	"	1285	답	36	26		경상남도			
161	"	1286-5	도	33	32		국(국토교통부)			
162	"	1286-6	답	51	5		경상남도			
163	"	1286-7	답	55	32		경상남도			
164	"	1286-11	답	283	211		경상남도			
165	"	1572-3	도	2,449	917		국(건설부)			
166	"	1573-1	천	462	257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로 33, 109동 1903호(효성백 년가약)	윤동묵			
167	"	1573-3	도	4,053	4,053		국(건설부)			
168	"	1575	구	83,361	2,498		국(농림축산식 품부)			
169	"	1575-2	구	2,190	100		국(농림수산부)			
170	"	1575-37	구	1,054	267		국(농림축산식 품부)			
171	"	1584	도	185	185		국(건설부)			
172	"	1585	도	698	698		국(건설부)			
173	"	1587	도	3,884	3,884		국(건설부)			
174	"	1588	도	496	496		국(건설부)			
175	"	1597	도	5,971	1,749		국(건설부)			
176	"	1598	도	2,321	2,321		국(건설부)			
177	"	1600	도	2,284	2,284		국(건설부)			
178	"	1606	도	9,537	13		국(건설부)			
179	"	1607-1	구	451	127		국(농림축산식 품부)			
180	"	1615-2	구	1,333	335		국(농림축산식 품부)			
181	"	1616-3	도	263	110		국(국토해양부)			
182	"	1617	도	2,450	1,063		국(건설부)			
183	"	1618	도	692	103		국(건설부)			
184	"	1618-1	도	2,868	441		국(건설부)			
185	"	1619	천	44,681	2,077		국(건설부)			
186	"	1622	도	16,284	459		국(건설부)			
187	"	1628	도	4,569	1,099		국(건설부)			
188	"	산45-2	도	1335	509		국(국토교통부)			
189	"	산45-4	도	435	234		국(국토교통부)			
190	"	산45-5	임	96	221		경상남도			
191	"	산83-1	도	8,757	5,568		국(건설부)			
192	"	산86-4	도	7,397	6,992		국(건설부)			
193	"	산87-5	도	200	200		국(건설부)			

일련 번호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94	"	산87-6	도	789	789		국(건설부)			
195	"	산87-7	도	371	371		국(건설부)			
196	"	산87-8	도	886	886		국(건설부)			
197	"	산88-1	도	6,459	6,459		국(건설부)			
198	"	산89-1	도	962	962		국(건설부)			
199	"	산157-6	도	3,639	3,639		국(국토해양부)			
200	"	산157-7	도	833	833		국(국토해양부)			
201	"	산158-1	도	4,386	2,226		국(국토해양부)			
202	"	산158-2	도	2,970	2,970		국(국토해양부)			
203	"	산158-3	도	149	149		국(국토해양부)			
204	"	산159-1	도	1,124	1,124		경상남도			
205	"	산159-3	도	547	547		경상남도			
206	"	산159-4	도	417	417		경상남도			
207	"	산160-1	도	1,312	1,312		경상남도			
208	"	산161-1	도	331	331		경상남도			
209	"	산166-1	도	1,859	1,859		경상남도			
210	"	산167-2	도	708	708		경상남도			
211	"	산170-6	도	1,411	1,411		경상남도			
212	"	산170-7	도	329	329		경상남도			
213	"	산170-8	도	879	879		경상남도			
214	"	산173-1	도	632	632		경상남도			
215	"	산177-1	도	931	931		경상남도			
216	"	산177-2	도	25	25		경상남도			
217	"	산178-6	도	635	635		경상남도			
218	"	산178-7	도	395	395		경상남도			
219	"	산179-5	도	1,184	1,184		경상남도			
220	"	산179-6	도	32	32		경상남도			
221	"	산179-7	도	713	713		경상남도			
222	"	산179-9	도	249	249		경상남도			
223	"	산179-1 0	도	40	40		경상남도			
224	"	산180	도	198	198		경상남도			
225	"	산182-1	도	28	28		경상남도			
226	"	산182-2	도	1,364	1,364		경상남도			
227	"	산182-4	도	915	915		경상남도			
228	"	산214-1	도	725	725		경상남도			
229	"	산214-2	도	671	61		국(국토교통부)			
230	"	산216-4	도	17,437	4,363		국(국토교통부)			
231	"	산219	도	496	412		국(국토교통부)			
232	"	산222-5	도	5,141	901		국(국토교통부)			
233	"	산233-4	도	5,661	870		국(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234	"	산235-2	도	1,971	2		국(국토교통부)			
235	"	산236-4	임	123	103		국(국토해양부)			
236	"	산236-6	도	75	25		국(국토교통부)			
237	"	산236-9	도	1,358	817		국(국토해양부)			
238	"	산237-1 0	도	100	100		경상남도			
239	"	산237-1 1	도	170	170		경상남도			
240	"	산237-1 2	임	516	280		국(국토해양부)			
241	"	산237-1 3	임	230	1		국(국토해양부)			
242	"	산238-1	도	47	47		국(국토해양부)			
243	"	산238-3	도	1,183	452		국(국토교통부)			
244	"	산239-1	도	788	372		국(국토교통부)			
245	"	산385	도	2,250	703		국(건설부)			
246	"	산386	구	109	109		국(농림수산부)			
247	"	산387	도	10,173	6,260		국(건설부)			
248	"	산412-1	구	59	15		국(농림축산식품부)			
249	가조면 동례리	1725-1	도	33	33		경상남도			
250	"	1726-1	도	628	628		경상남도			
251	"	1727-1	도	291	291		경상남도			
252	"	1727-3	도	2	2		경상남도			
253	"	1728-1	도	86	86		경상남도			
254	"	1728-3	도	53	53		경상남도			
255	"	1729-1	도	136	136		경상남도			
256	"	1729-3	도	218	218		경상남도			
257	"	1730-1	도	17	17		경상남도			
258	"	1730-3	도	204	204		경상남도			
259	"	1731-1	도	157	157		경상남도			
260	"	1732-1	도	661	661		경상남도			
261	"	1732-2	도	38	38		경상남도			
262	"	1737-5	도	149	149		경상남도			
263	"	1737-6	도	129	129		경상남도			
264	"	1737-7	도	41	41		경상남도			
265	"	1737-8	도	194	194		경상남도			
266	"	1774-1	도	330	330		국(농림수산부)			
267	"	1774-2	구	294	294		국(농림수산부)			
268	"	1774-3	도	512	136		국(농림수산부)			
269	"	1790	도	2,998	2,372		국(국토교통부)			
270	"	산279-4	도	215	215		경상남도			
271	"	산280-1	도	1,092	785		국(건설부)			

일련 번호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272	"	산280-2	도	1,026	956		경상남도			
273	"	산280-3	도	15	15		경상남도			
274	"	산281-1	도	6,001	3,710		국(건설부)			
275	"	산281-2	도	851	851		경상남도			
276	"	산282-1	도	261	261		국(국토해양부)			
277	"	산282-2	도	676	676		국(국토해양부)			
278	"	산282-3	도	315	313		국(국토해양부)			
279	"	283-7	도	1,058	1,058		경상남도			
280	"	산283-8	도	133	133		경상남도			
281	"	산283-9	도	19	19		경상남도			
282	"	산283-1 0	도	2,489	2,489		경상남도			
283	"	산284-1	도	2,442	48		경상남도			
284	"	산286-4	도	337	337		경상남도			
285	"	산289	도	198	198		경상남도			
286	"	산290-1	도	2,190	2,190		경상남도			
287	"	산291-1	도	1,270	1,270		경상남도			
288	"	산301	도	6,582	4,548		국(건설부)			

●거창군 고시 제2021-75호

농어촌도로[102호선] 노선지정 공고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거창군 공고 제2021-662호(2021. 4. 28)로 농어촌도로[102호선] 노선지정 공고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4일

거창군수

1. 도로노선의 지정 내용

읍면	도로의 종류	노선명	노선번호	도로구간		총연장 (m)	주요 경과지	개발계획		지정사유
				기점	종점			도로 너비 (m)	포장 너비 (m)	
가조	면도	평촌선	102호선	가조동레 276	가조동레 574-3	2,440	-	14m	14m	구88올림픽 고속국도 인계인수

2. 군관리계획(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3	65	12~90	국 지 도로	2,440	가조동레 276	가조동레 574-3	일 반 도로	-	-	

3. 거창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도 : 게재 생략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리	지번					
계				159,408	132,315		
1	동례	산 276-1	도	61,048.0	61,048.0	국(국토교통부)	
2	동례	528-3	도	3,098.0	1,224.0	국(국토교통부)	
3	동례	529-9	구	11.0	11.0	국(국토교통부)	
4	동례	529-16	답	28.0	28.0	국(국토교통부)	
5	동례	529-19	도	556.0	556.0	국(국토교통부)	
6	동례	529-20	구	10.0	10.0	국(국토교통부)	
7	동례	529-21	답	1.0	1.0	국(국토교통부)	
8	동례	530-7	구	368.0	368.0	국(국토교통부)	
9	동례	530-8	과	309.0	309.0	국(국토교통부)	
10	동례	536-2	전	604.0	604.0	국(국토교통부)	
11	동례	538-4	과	301.0	301.0	국(국토교통부)	
12	동례	539-2	과	20.0	20.0	국(국토교통부)	
13	동례	547	전	18.0	18.0	국(국토교통부)	
14	동례	548-2	전	380.0	380.0	국(국토교통부)	
15	동례	549	전	100.0	100.0	국(국토교통부)	
16	동례	550-1	임	644.0	644.0	국(국토교통부)	
17	동례	551-1	답	45.0	45.0	국(국토교통부)	
18	동례	555-2	답	1,579.0	1,579.0	국(국토교통부)	
19	동례	560-4	답	319.0	4.0	국(국토교통부)	
20	동례	561-1	답	463.0	463.0	국(국토교통부)	
21	동례	562-2	답	425.0	425.0	국(국토교통부)	
22	동례	563-2	답	641.0	641.0	국(국토교통부)	
23	동례	574-3	도	679.0	679.0	국(국토교통부)	
24	동례	947-9	도	516.0	182.0	국(국토교통부)	
25	동례	947-10	도	1,679.0	777.0	국(국토교통부)	
26	동례	947-12	도	34.0	34.0	국(국토교통부)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리	지번					
27	동례	947-13	도	10.0	10.0	국(국토교통부)	
28	동례	979-1	도	8,293.0	7,901.0	국(국토교통부)	
29	동례	979-2	도	168.0	168.0	국(건설부)	
30	동례	979-3	도	138.0	138.0	국(건설부)	
31	동례	979-4	도	118.0	118.0	국(건설부)	
32	동례	979-5	도	342.0	342.0	국(건설부)	
33	동례	979-6	도	130.0	130.0	국(건설부)	
34	동례	979-7	도	243.0	243.0	국(건설부)	
35	동례	979-8	도	90.0	90.0	국(건설부)	
36	동례	979-9	도	69.0	69.0	국(건설부)	
37	동례	1524-1	도	124.0	124.0	국(국토교통부)	
38	동례	1543	도	9,532.0	9,532.0	국(국토교통부)	
39	동례	1543-1	도	192.0	192.0	국(건설부)	
40	동례	1543-2	도	151.0	151.0	국(건설부)	
41	동례	1543-3	도	201.0	201.0	국(건설부)	
42	동례	1543-4	도	251.0	251.0	국(건설부)	
43	동례	1543-5	도	184.0	184.0	국(건설부)	
44	동례	1543-6	도	143.0	143.0	국(건설부)	
45	동례	1543-7	도	152.0	152.0	국(건설부)	
46	동례	1543-8	도	31.0	31.0	국(건설부)	
47	동례	1550	도	1,506.0	1,506.0	국(국토교통부)	
48	동례	1550-1	도	160.0	160.0	국(건설부)	
49	동례	1578	도	9,955.0	9,035.0	국(국토교통부)	
50	동례	1578-1	도	751.0	751.0	국(건설부)	
51	동례	1578-2	도	1,620.0	1,620.0	국(건설부)	
52	동례	1578-3	도	326.0	326.0	국(건설부)	
53	동례	1674-1	도	304.0	304.0	국(국토교통부)	
54	동례	1675-1	도	405.0	405.0	국(국토교통부)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리	지번					
55	동례	1676-2	도	998.0	998.0	국(국토교통부)	
56	동례	1676-3	도	41.0	41.0	국(국토교통부)	
57	동례	1676-4	도	904.0	904.0	국(국토교통부)	
58	동례	1678-2	도	396.0	396.0	국(국토교통부)	
59	동례	1748-4	구	14.0	14.0	국(농림축산식품부)	
60	동례	1765-19	구	13,706.0	3,923.0	국(농림축산식품부)	
61	동례	1765-20	구	639.0	432.0	국(농림축산식품부)	
62	동례	1765-21	구	348.0	348.0	국(농림축산식품부)	
63	동례	1783-3	도	1,605.0	387.0	국(건설부)	
64	동례	산189-1	도	424.0	258.0	국(건설부)	
65	동례	산189-2	임	21.0	21.0	국(국토교통부)	
66	동례	산190-18	도	11,204.0	9,655.0	국(건설부)	
67	동례	산195-3	구	604.0	604.0	국(국토해양부)	
68	동례	산195-6	도	634.0	634.0	국(건설부)	
69	동례	산212-1	도	2,565.0	2,565.0	국(건설부)	
70	동례	산232-8	도	1,057.0	1,057.0	국(건설교통부)	
71	동례	산232-10	도	2,311.0	2,311.0	유정준	
72	동례	산232-11	도	1,639.0	1,639.0	국(국토해양부)	
73	동례	산232-12	도	252.0	252.0	국(건설부)	
74	동례	산308	구	10,581.0	1,148.0	국(농림수산부)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5. 4.

거창군수

- 부여한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강남로3길 42-18 등 6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램)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제7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3)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부여.변경.폐지) 고시 조서

일련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이동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473-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강남로3길 42-18	20210504	20090401	강남로의 시작점에서 부터 세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 부여	
2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상천리 965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덕거길 190-13	20210504	20090401	덕거라는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건물번호 부여	
3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와룡리 1622-3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소룡길 179	20210504	20090401	마을 뒤에 소룡산이 있어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건물번호 부여	
4	경상남도 거창군 옹양면 신촌리 산22-6	경상남도 거창군 옹양면 신기촌길 137-223	20210504	20090401	새로 생긴 마을이라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건물번호 부여	
5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용산리 10-6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어인길 236-34	20210504	20090401	어인이라는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건물번호 부여	
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1112-8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6길 19	20210504	20160420	송정이란 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 및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3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가. 「폐기물관리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취지에 맞게 종량제봉투 규격 정비 및 폐기물 배출 시 무게 상한을 정하고,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분리·보관 의무를 부과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종량제봉투로 생활폐기물 배출 시 무게상한 신설(안 제8조 제6항)

1) 75리터: 19킬로그램 이하

2) 50리터: 13킬로그램 이하

나.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분리·보관 의무 부과(안 제7조의2)

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적용에 따른 예외 신설(안 제12조의 2)

라. 종량제봉투 규격 정비(안 별표 3)

- 1) 삭제 : 100리터(폴리프로필렌 마대 포함)
- 2) 신설 : 75리터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21. 5. 3. ~ 2021. 5. 24.(21일간)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환경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 주 소 : (우 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환경과

- 전화번호 : 055)940-3502

- FAX : 055)940-3759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의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4조의3제1항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각각 한다.

제5조제1항 중 “폐기물처리시설(이하 ”폐기물처리장“으로 한다)”를 “폐기물처리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업장일반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를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로 “kg이상”을 “킬로그램 이상”으로 한다.

제6조 앞의 “제2장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수집·운반·처리”를 삭제한다.

제7조제3항 중 “별표 2이”를 “별표 2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포함한다)을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할 경우, 규격별로 다음 각 호의 무게 기준 이하로 배출해야 한다.

1. 75리터: 19킬로그램
2. 50리터: 13킬로그램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가연성, 불연성 및 재활용가능 폐기물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종이류, 캔류 병류, 플라스틱류 등으로 분리·보관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보관 장소는 악취 및 해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군수는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주민 생활불편 초래 등을 고려하여 주간작업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가로청소 작업, 자동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한 작업 등 작업 종류, 여건 등을 고려하여 3명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생활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 앞의 “제4장 종량제봉투의 제작 및 봉투판매소 운영”을 삭제한다.

제15조 조 제목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도와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의 재질)”을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종량제봉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한다.

1. 일반용봉투·재사용봉투: 생활폐기물
2. 공공용봉투: 도로변·골목길 쓰레기, 자연정화쓰레기 등
3.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제21조 앞의 “제5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삭제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아니한다.”를 “없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같다.”를 “같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한다.”를 “함”으로 한다.

제26조 앞의 “제7장 보칙”을 삭제한다.

별표 1 가전제품류란 및 그 밖의 폐기물란 중 마지막 칸에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종 별		규 격	처리비
가전 제품류	전기장판	모든 규격	3,000
그 밖의 폐기물	그 밖에 미선별 생활폐기물	10킬로그램 기준	2,000

별표 2,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4 비고란 중 “1매당”을 “장당”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보관중인 100리터 중량제봉투(폴리프로필렌 마대 포함)는 제7조제6항 및 별표 3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판매 및 사용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1장 총칙</u></p> <p>제4조의3(청결유지 조치) ①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u>범위 내에서</u>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u>범위 내에서</u>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5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폐기물 등 군수가 설치·운영하는 <u>폐기물처리시설</u> (이하 “폐기물처리장”이라 한다)로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에 적용한다.</p> <p>②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u>의하여</u> 군수가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 제외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외의 군 전역에 적용한다.</p> <p>③ <u>사업장일반폐기물</u>로서 생활폐기물과 <u>성상이 유사하여</u>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1일 300kg 이상이라 하더라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p> <p><u>제2장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수집·운반·처리</u></p> <p>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에 따른 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p>	<p><u><삭 제></u></p> <p>제4조의3(청결유지 조치) ①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u>범위에서</u>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u>범위에서</u>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5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폐기물 등 군수가 설치·운영하는 <u>폐기물처리시설</u>로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에 적용한다.</p> <p>②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u>따라</u> 군수가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 제외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외의 군 전역에 적용한다.</p> <p>③ <u>사업장생활계폐기물</u>로서 생활폐기물과 <u>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u>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1일 300킬로그램 이상이라 하더라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p> <p><u><삭 제></u></p> <p>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에 따른 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p>

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방법 및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2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 등의 수집·운반·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일몰 후부터 다음 날 일출 전까지 배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방법 및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 등의 수집·운반·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일몰 후부터 다음 날 일출 전까지 배출하여야 한다.

⑥ 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포함한다)을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할 경우, 규격별로 다음 각 호의 무게 기준 이하로 배출해야 한다.

1. 75리터: 19킬로그램

2. 50리터: 13킬로그램

제7조의2(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가연성, 불연성 및 재활용가능 폐기물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종이류, 캔류, 병류, 플라스틱류 등으로 분리·보관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보관 장소는 악취 및 해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군수는 시행규칙 제16조의 3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주민 생활불편 초래 등을 고려하여 주간작업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가로청소 작업, 자동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한 작업 등 작업 종류, 여건 등을 고려하여 3명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생활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삭 제>

제4장 종량제봉투의 제작 및 봉투판매소 운영

제15조(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도와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의 재질)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 재사용봉투, 공공용봉투 및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로 구분하고, 일반용봉투와 재사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골목길쓰레기 및 자연정화쓰레기 등을 담아야 하며,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음식물쓰레기만 담아야 한다.

②~③ (생 략)

제5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제15조(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도)

① 종량제봉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한다.

1. 일반용봉투·재사용봉투: 생활폐기물
2. 공공용봉투: 도로변·골목길 쓰레기, 자연정화쓰레기 등
3.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②~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제21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 (생략)

제7장 보칙

제21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음.
2. 대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수수료는 별표 1과 같음.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함.

② (현행과 같음)

<삭제>

[별표 2]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2조제4호 및 제7조 관련)

종류	세부품목	배출요령
1. 골판지류	가. 골판지상자 등	1)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2)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2. 골판지 외 종이류	나. 종이팩(살균팩, 멸균팩,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주스팩 등을 말한다)	1)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 제거 후 말린 후 배출 2)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3)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4)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다. 신문지	1)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2)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라. 책자, 노트, 전단지 등	1)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마. 종이컵	1)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바. 그 밖의 종이류	1)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3. 유리병	가. 음료수병, 그 밖의 병류	1)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2) 담배꽂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3)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4)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5)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6)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품목: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중량제 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 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 (P.P마대에 담아서 배출하거나, 대형폐기물 처리방 법으로 배출)
4. 금속캔	가. 음료·주류캔, 식료품캔(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이 해당함)	1)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 여 배출 2) 담배꽂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3)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알루미늄 호일은 중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
	나. 그 밖의 캔류(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이 해당 함)	1)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가)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 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비해당품목: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 통 등)는 P.P마대에 담아 배출
5. 무색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ET)병	가.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 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병 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1)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 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6.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 쟁반형 용기류	가.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쟁반형 용기류(음료용기, 세정용기 등이 해당함)	1)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 여 배출 ※ 물로 행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2)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3)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 는 제거하여 배출 ※ 비해당 품목: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과일철, 전화기, 낚 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중량제봉투, P.P마대에 담아서 배 출하거나 대형폐기물 처리방법으로 배출

<p>7. 합성수지 비닐류</p>	<p>가. 비닐포장재, 1회용 비닐봉투(각종 비닐류 해당함)</p>	<p>1)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 제거하여 배출 2) 흘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cm²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ml 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해당 품목: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돛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종량제봉투, P.P마대에 담아서 배출하거나 대형폐기물 처리방법으로 배출</p>
<p>8. 발포 합성수지</p>	<p>가. 스티로폼 완충재(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가 해당함)</p>	<p>1)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2)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3)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비해당 품목: 다른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봉투, P.P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배출</p>
<p>9. 의류 및 원단류</p>	<p>가. 면의류 나. 그 밖의 의류 가. 식물성 섬유(면, 마 등) 나. 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다.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라. 그 밖의 합성섬유류</p>	<p>1) 군수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갖춰 둔 헌옷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문전수거 지역 등에서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대문 앞 배출</p>
<p>10. 전지류</p>	<p>가.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자 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p>	<p>1)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2)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3) 주요 거점에 갖춰 둔 폐건전지 수거함에 배출</p>

11. 형광등	가.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그 밖에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1) 읍면사무소 또는 아파트 내 형광등 분리배출용기에 배출
14. 가전 제품류	가. 대형가전제품(냉장고, 텔레비전, 세탁기, 에어컨)을 제외한 가전제품	1)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2) 읍면사무소 또는 아파트 내 소형폐가전제품 분리수거함에 배출

[별표 3]

종량제봉투 공급 및 판매 가격(제21조제2항 관련)

1. 종량제봉투 가격의 산정방법

$$\text{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 \times \text{수수료자립도} + \text{제작비} + \text{판매이익}$$

- 가.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은 압록카, 밀폐식 압축용기등 현대적인 위생장비를 사용할 경우의 수거·운반비용과 침출수처리시설·가스포집시설등이 설치된 위생매립지 및 위생소각장에서 반입·처리되는 경우의 최종처리비용을 합하여 산정함.
- 나. 수수료자립도는 거창군의 기존 자립도·대행체제에서 직영으로 변경될 때의 부담감,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자기 부담률의 현실화 방침에 따라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해야 함.
- 다. 제작비는 종량제봉투 용량별 제작단가를 말함.
- 라. 판매이익은 복권판매이익과 같이 9퍼센트를 적용,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 \times 수수료자립도 \times 0.09로 산정함.

2. 종량제봉투 공급·판매 가격

(단위: 원)

용량	공급 가격(장당)	판매 가격(장당)
3리터	45	50
5리터	91	100
10리터	182	200
20리터	364	400
50리터	819	900
75리터	1,228	1,350
50리터 (pp)	964	1,060

【별표 4】

대형 폐기물스티커 공급·판매 가격(제21조제2항 관련)

규격별	공급 가격	판매 가격	비고
1,000원권	910원	1,000원	○ 장당 가격 ○ 판매이익 9퍼센트
2,000원권	1,820원	2,000원	
3,000원권	2,730원	3,000원	
4,000원권	3,640원	4,000원	
5,000원권	4,550원	5,000원	
10,000원권	9,100원	10,000원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례명 :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 2020. 12. 4.] [법률 제16699호, 2019. 12. 3., 타법개정]

제14조의5(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집·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이하 이 조에서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안전기준, 적용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에서는 분리·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1. 27.] [환경부령 제891호, 2020. 11. 27., 일부개정]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3.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나.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다. 폭염·강추위, 폭우·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환경부)

2. 생활폐기물 배출에 관한 사항

가. 종량제 적용대상 폐기물의 배출방법(자동집하시설 설치 경우 포함)

- 종량제 적용대상 폐기물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작·판매하는 종량제봉투, 배출 스티커 부착 및 기타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

- 50L 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사업장생활계 폐기물 포함)로 배출 시 압축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종량제봉투 무게 상한을 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통해 제한
 - ※ (예시) 100L: 25kg 이하, 75L: 19kg 이하, 50L: 13kg 이하(폐기물 배출 밀도를 0.25kg/L 이하)

8.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사업장폐기물의 종량제 확대 적용

- 사업장일반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의 경우 1일 300kg 이상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종량제를 가능한 한 확대 적용
- 공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대하여는 가능한 한 일괄적으로 종량제를 확대 적용
- 사업장일반폐기물로서 자치단체에서 처리 가능한 재활용품은 자치단체장의 판단 하에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유·무상으로 반입 처리가능
-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거용 종량제봉투는 일반 가정에서 배출하는 종량제 봉투에 비해 무거워 환경미화원 수거작업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100L 봉투 제작을 금지

□ 2022년(2021년실적) 정부합동평가 대상

평가 지표	폐기물 관리조례 적기 개정 추진실적 (신규)
측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 적기 개정실적 : 폐기물 관리조례 개정 건수 ○ 산식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기물 관리조례 개정건수 - 「<u>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u>」에 따른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내용 포함한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21.12월까지 조례 개정안이 공포된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며, 입법예고 중이거나 지방의회에 제출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② 시군별 폐기물 관련 조례 시행규칙 등에 포함되더라도 실적으로 인정하나, 재활용품 분리배출방법(요령) 등에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③ '21년 이전 기 조례 개정 완료한 경우 실적으로 인정함 ○ 목표치: 조례개정 1건 ○ 평가대상 시·군 ○ 평가기준일: 2021. 12. 31.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시행 2020. 12. 25.] [환경부훈령 제1462호, 2020. 8. 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하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이하 "시·군·구"라 한다)가 지켜야 할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류·보관·수거·운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의 분리·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대형폐기물, 1회용 비닐봉투, 음식물쓰레기 등 별도의 수거·처리 등에 관한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분리수거를 하여야 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별표 1의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각 시·군·구별 여건을 고려하여 분리수거를 시행하되,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분리배출표시 대상인 포장재는 분리수거 대상품목으로 지정하는 등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수거하여야 한다.

[별표 1]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1. 재활용가능자원 품목별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가. 골판지류	· 골판지상자 등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편,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나. 골판지 외 종이류	· 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주스팩 등
	·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 책자, 노트, 전단지 등	-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 종이컵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 기타 종이류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다. 유리병	· 음료수병,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을 제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기타 병류	<p>거하여 배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배꽂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p>※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p>
라. 금속캔	· 음료·주류캔, 식료품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꽂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p>※ 해당품목 예시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p> <p>※ 알루미늄 호일은 종량제봉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p>
	· 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p>※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p> <p>※ 해당품목 예시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p> <p>※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는 특수규격마대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p>
마.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바.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	·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p>※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착상표, 부착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p>거한 후 배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 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과일철, 전화기, 낚시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사. 합성수지 비닐류	· 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 제거하여 배출 - 흘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cm²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ml 또는 30g 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해당 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돛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아. 발포 합성수지	· 스티로폼 완충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자. 의류 및 원단류	· 면의류 · 기타 의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문전수거 지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물성 섬유(면, 마 등) · 동물성 섬유(울, 모 직 등) ·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 기타 합성섬유류 	역 등에서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대문 앞 배출
차. 전지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 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정된 전지류 수거일·장소에 배출
카. 형광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별 형광등 분리배출용기에 배출

□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생략)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생략)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 및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3일

거창군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가.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종량제봉투 규격 정비(안 별표 1)

1) 삭제 : 100리터(폴리프로필렌 마대 포함)

2) 신설 : 75리터

나. 생활폐기물 대행신청서식 정비(안 별지 제1호서식·제2호서식)

4. 개정 규칙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21. 5. 3. ~ 2021. 5. 24.(21일간)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환경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 주 소 : (우 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환경과

- 전화번호 : 055)940-3502

- FAX : 055)940-3759

거창군 규칙 제 호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조 제목 “(대형폐기물 및 폐기물처리장 처리 수수료 납부)”을 “(대형폐기물 및 폐기물처리시설 처리 수수료 납부)”로 한다.

제11조 중 “처리장”을 “처리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별지 제14호 서식)”을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별지 제15호 서식)”을 “(별지 제15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별지 제16호 서식)”을 “(별지 제16호서식)”으로 한다.

별표 1,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0조(대형폐기물 및 폐기물처리장 처리 수수료 납부) ①~④ (생략)</p> <p>제11조(폐기물 관리대장) 대형폐기물 및 처리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관리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소차량 폐기물 반입(계량)대장 (별지 제14호 서식) 2. 일반차량 폐기물 반입(계량)대장 (별지 제15호 서식) 3. 대형 생활폐기물 처리대장(별지 제16호 서식) 	<p>제10조(대형폐기물 및 폐기물처리시설 처리 수수료 납부) ①~④ (현행과 같음)</p> <p>제11조(폐기물 관리대장) 대형폐기물 및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관리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소차량 폐기물 반입(계량)대장 (별지 제14호서식) 2. 일반차량 폐기물 반입(계량)대장 (별지 제15호서식) 3. 대형 생활폐기물 처리대장(별지 제16호서식)

[별표 1]

중량제봉투의 크기 및 용도

봉투의 용량	용도	비고
3리터	일반용(가정, 사업장), 음식물전용	
5리터	일반용(가정, 사업장), 음식물전용	
10리터	일반용(가정, 사업장), 공공용, 재사용	
20리터	일반용(가정, 사업장), 공공용, 재사용	
50리터	일반용(가정, 사업장), 공공용, 재사용	
75리터	일반용(가정, 사업장)	
50리터(PP)	일반용(가정, 사업장)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 대행신청서(제2조 관련)						처리 기간	
						50 일	
대행 신청 업자	상 호			소재지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남/여)		전화번호	사무실: 자택:		
	영업종류			영업구역			
대 행 신 청 내 역							
대상 (구분명)	처리구역	소유자 (관리자)	거주사항		폐기물수집 운반예상량 (톤/일)	수집운반 방법	비고
			세대주	인구수			
<p>「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군수가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자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 신청인 :</p> <p style="text-align: center;">거 창 군 수 귀하</p>							
<p>구비서류 1. 수집·운반·처리대행계획(붙임 서식) 2. 시설장비 및 수집·운반·처리인력 보유사항(증명자료붙임) 3. 수집·운반·처리대행 수지분석 자료(재무재표붙임) 4. 수집·운반·처리대행 수수료 징수계획(수수료율 및 징수방법 등) 5.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 위탁계약서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p>							

<붙임 서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계획서 (제2조 관련)

1. 대 행 신 청 자:

- 상 호:
- 소 재 지:
- 대표자 성명: 주소
- 영업의 종류: (구역)

2. 대 행 계 획

구분	대 상 (규모)	위 치 (주 소)	거 주 사 항		폐기물수집 운반예상량 (톤/일)	폐 기 물 수집운반 처리방법	투입 인력 장비	비고
			세대주	인구수				

주) 주택단지, 상가, 공장, 공공시설별 대상내역표 첨부

3. 수집·운반·처리인력 및 시설장비 확보 운영

4. 수집·운반·처리업 수지계산(재무재표 붙임)

구 분	수 입	지 출
자 산		
부 채		
자 본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목적	1. 일반폐기물(수집·운반·처리) 대행신청 관련 업무 2. 쓰레기봉투판매소 신청 등 관련 업무 3. 그 밖에 폐기물 반입·배출 등 관련 업무
2. 개인정보 수집항목	<input type="checkbox"/> 성명 <input type="checkbox"/> 생년월일 <input type="checkbox"/> 주소 <input type="checkbox"/> 전자우편 <input type="checkbox"/> 전화번호
3. 개인정보 보유 기간	신청서 및 대장: 2년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개인정보 항목별 수집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 사용승인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전자정부법」 제38조 및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전자적으로 신청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동의하지 않음)합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10px;">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div>	

[별지 제2호서식]

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 대행지정서(제2조관련)							
대행 신청 업자	상 호		소재지				
	대 표 자		주 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사무실 :	자택 :	
	영업종류		영업구역				
대 행 지 정 내 역							
대상 (구분명)	처리구역	소유자 (관리자)	거 주 사 항		폐기물수집 운반예상량 (톤 / 일)	수집운반 방 법	비 고
			세대주	인구수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수집·운반·처리대행을 지정합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년 월 일 </div>							
거 창 군 수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례명 :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관련법령

□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에 따른 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방법 및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 등의 수집·운반·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일몰 후부터 다음 날 일출 전까지 배출하여야 한다.

⑥ 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포함한다)을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할 경우, 규격별로 다음 각 호의 무게 기준 이하로 배출해야 한다.

1. 75리터: 19킬로그램

2. 50리터: 13킬로그램

제7조의2(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가연성, 불연성 및 재활용가능 폐기물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종이류, 캔류 병류, 플라스틱류 등으로 분리·보관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보관 장소는 악취 및 해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군수는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주민 생활불편 초래 등을 고려하여 주간작업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 하는 경우

2. 가로청소 작업, 자동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한 작업 등 작업 종류, 여건 등을 고려하여 3명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생활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도) ① 종량제봉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한다.

1. 일반용봉투·재사용봉투: 생활폐기물

2. 공공용봉투: 도로변·골목길 쓰레기, 자연정화쓰레기 등

3.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 ② 종량제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에 생분해 물질을 첨가한 생분해 물질을 첨가한 생분해성 봉투와 폴리프로필렌 마대(이하 "PP"라 한다)로 하며, 일반용 봉투의 색깔은 황색으로,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옅은 청색으로 한다.
- ③ 종량제봉투의 크기·용도·형태는 규칙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 2020. 12. 4] [법률 제16699호, 2019. 12. 3,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생략)

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9. (생략)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④ (생략)

거창군계획시설[방재시설: 신기천(지방하천)] 『입석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군계획시설(방재시설:신기천)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04.

거 창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농산리 1856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사업(방재시설: 하천)
- 명 칭 : 입석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 사업시행 개요

- 실시계획인가 신청면적: 2,276㎡

종류	명 칭	위 치		연장 (km)	폭 (m)	면적 (㎡)	시 행 구 간	최 초 결정일	사업기간
		읍면	리						
방재시설: 하천	입석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고제	농산	5.98	20~ 30	150,300	고제면 농산리 1856 ~ 고제면 농산리 203-6	거고 제2008-43호 (2008.09.25)	실시계획인가일 ~ 2024 .06. 30

4.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거창군수(안전총괄과장)
-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5. 열 략 기 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공휴일제외)

6. 열 략 장 소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83)

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붙임참조

8. 의견제출 및 열람 : 사업시행에 관한 세부내용 및 관계서류는 위 열람장소에 비치하고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주민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성 명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끝".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	145,521	1,873					
1	고제면 농산리	1856	도	998	89		건설부			
2	고제면 농산리	752-1	대	162	86		전두*			
3	고제면 농산리	752-2	도	17	17		전재*			
4	고제면 농산리	1856-1	대	23	23		건설부			
5	고제면 농산리	204-2	도	109	109		이재*			
6	고제면 농산리	203-7	도	327	53		이현*			
7	고제면 농산리	204-3	대	50	50		최재*			
8	고제면 농산리	203-5	도	307	175		이현*			
9	고제면 농산리	203-3	도	63	7		이현보			
10	고제면 농산리	203-6	대	350	224		강정*			
11	고제면 농산리	686-2	도	83	83		거창군			
12	고제면 농산리	702-2	도	152	65		거창군			
13	고제면 농산리	702-3	답	30	12		박병*			
14	고제면 농산리	686-3	대	304	134		김동*			
15	고제면 농산리	1857	구	173	9		건설부			
16	고제면 농산리	1861	도	312	94		농림수산부			
17	고제면 농산리	1848	천	142,061	643		건설부			

거창군관리계획(교통시설: 중로3-12) 결정(변경)(안) 열람 공고

거창군관리계획(교통시설: 중로3-12)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거창군 계획조례」의 제7조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5월 04일

거 창 군 수

1. 거창군관리계획(교통시설: 도로)결정(변경) 조서

■ 교통(도로)시설(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12	12	집산 도로	2,880	소로 2-282	가조 수월 산11-4	일반 도로	가조수월 고건사	거고43호 (08.9.25)	군도32
변경	중로	3	12	5~12	집산 도로	2,895	소로 2-282	가조 수월 산11-4	일반 도로	항노화 힐링랜드	거고43호 (08.9.25)	

■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중로 3-12 호선	중로 3-12 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형변경 및 폭원, 연장변경 -폭원 : 12 m → 5m ~ 12m -연장 : 2,880m → 2,895m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노화 힐링랜드의 원활한 진출입 도모와 관광객의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한 도로의 정비를 위해서 현황도로에 맞게 선형 및 폭원, 연장을 변경함

2.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3. 열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 : 위의 거창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열람장소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공고 제2021-693호

도로의 사용 개시 공고

「도로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도로의 사용 개시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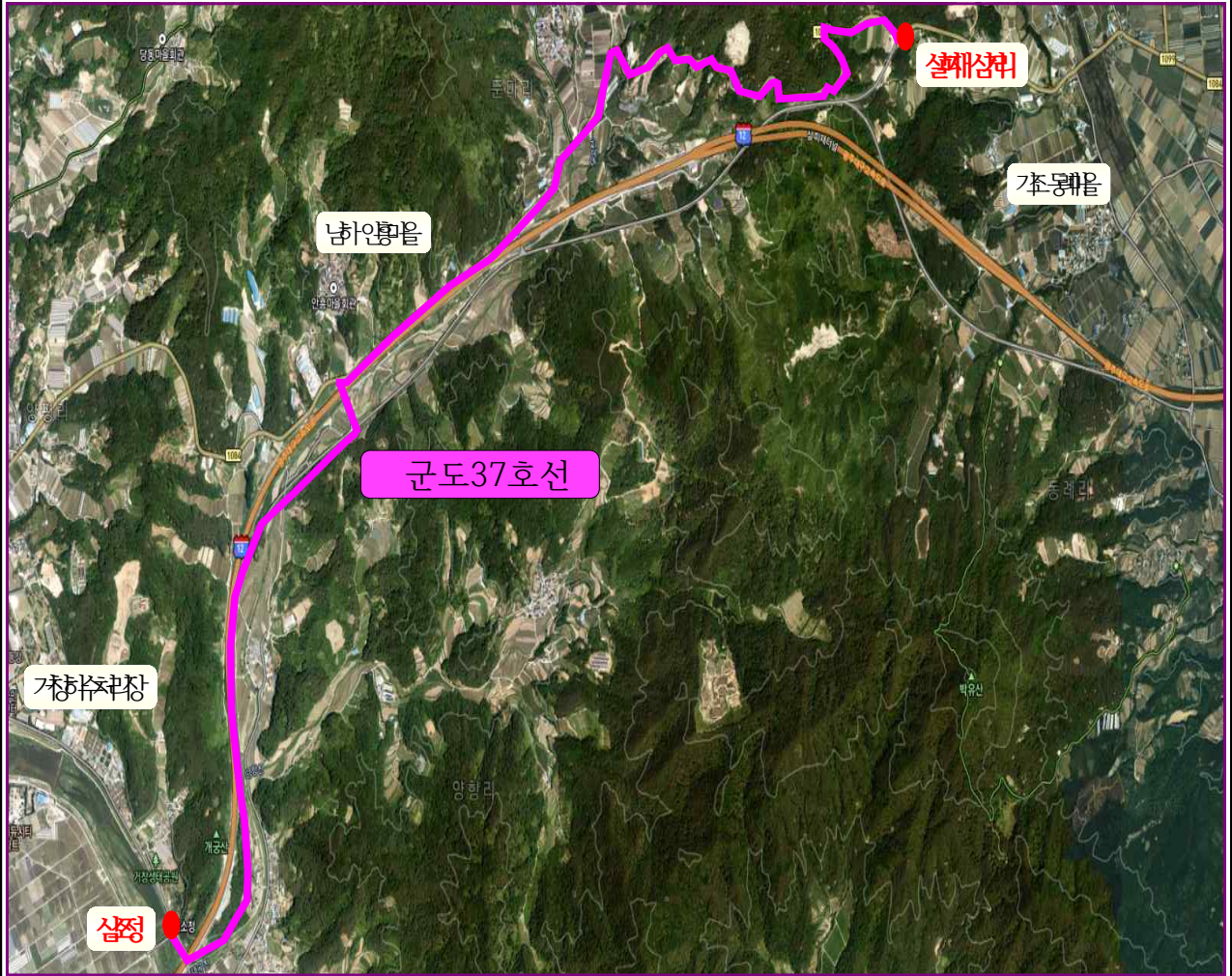
2021년 5월 4일

거창군수

1. 도로의 종류 : 군도
2. 노선의 번호 및 노선명 : 군도37호선(양항~동례선)
3. 사용개시 구간 :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양항리 1121 ~ 가조면 동례리 1725-1
4. 주요 통과지 : 남하면 둔마리
5. 사용 개시일 : 2021. 5. 4.(화)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간
 - 열람장소 : 경상남도 거창군청 건설과 도로담당 [☎(055)940-3552]

붙임 도로의 사용개시 구간 지형도

(붙임) 도로의 사용 개시구간 지형도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제8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3조 및 제77조의2,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정기 검사 안내문, 부과지서, 자동차 검사명령서, 건설기계 정비명령서, 건설기계검사지시 최고 통지, 압류통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주소불명, 이사감,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검사유효기간 경과 차량은 빠른 시일 내에 가까운 자동차검사소 또는 지정 정비사업소에서 자동차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정기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 규정에 의거 최고 30만원의 과태료,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속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번호판 영치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1항에 의거 직권말소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건설기계 검사안내 및 위반자 우편통지서 반송분 공시 송달
2. 공고기간 : 2021. 5. 6. ~ 2021. 5. 25.
3. 공고대상 : 72건(붙임내역 참조)
4. 문 의 처 : 거창군청 민원소통과 민원담당 (☎055-940-3293)

2021년 5월 6일

거 창 군 수